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7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6. 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소식지 편집 및 제작, 발행 등을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 활성화
- 나.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및 보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6조)
  -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 →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
  -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→ 관련 분야의 군 소속 공무원
  - 상임위원 삭제
- 나. 소식지 편집위원회 서기 인원 수정(안 제8조)
  - 서기 2인 → 서기 1인
- 다.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시기 수정(안 제9조)
  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 → 반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
- 라. 자료수집 삭제(안 제11조)
  -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 삭제
- 마. 수당 및 여비지급 삭제(안 제14조)
  -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 삭제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 필요없음

나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5. 3. ~ 5. 23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제한”을 “게제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단서 중 “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식
3.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의 역사·문화·관광

제5조제1호 중 “소식의”를 “소식지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소식지의 기획, 광고, 조정, 편집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회무”을 “위원회의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서기 2인”을 “서기 1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군 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”를 “반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의2 단서 중 “달성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<u>기재한</u>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재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발행)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(이하 "소식지"라 한다)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. 다만, <u>군수가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발행) ----- ----- ----- . --,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</u> -----.</p>
<p>제3조(게재사항)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의회소식</u></li> <li>3. <u>고장의 역사문화관광</u></li> <li>4. ~ 8. (생략)</li> </ol>	<p>제3조(게재사항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식</u></li> <li>3.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의 역사·문화·관광</u></li> <li>4. ~ 8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소식의 종합기획, 조정</u></li> <li>2. ~ 4. (생략)</li> </ol>	<p>제5조(기능)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소식지의</u> -----</li> <li>2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제6조(구성)

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및 기획, 광고, 조정, 편집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.

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(생략)

③ 상임위원은 소식지 발행과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, 조사, 연구,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구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소식지 발행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소식지의 기획, 광고, 조정, 편집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<삭제>

<삭제>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  
----- 위원회의 업무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.  
②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9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1조(자료수집)

① (생략)

②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14조(수당및여비지급)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의2(보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달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~ 2. (생략)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-----  
-----  
----- 서기 1인-----.

② ----- 군 소속공무원 ----- .

제9조(회의) ① ----- 반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자료수집)

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4조의2(보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 ---, 군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